

##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

'26. 6. 9.

관계부처합동

### 목 차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추진경과 및 개편방향 .....	3
III. 주요 추진과제 .....	5
1. 주거지원 .....	6
2. 자산형성 .....	8
3. 세제혜택 .....	9
IV. 향후 추진일정 .....	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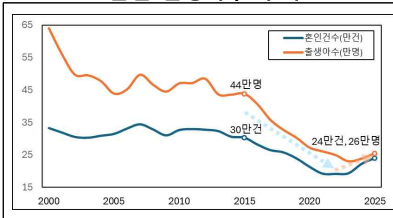
## I. 추진 배경

◇ 최근 합계출산율 등이 반등하였으나, 10년 내 20~30대 인구감소 본격화 → 출산율의 추세 반등을 위해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이 시급

### 1 최근 합계출산율·혼인건수가 반등하였으나, 하방위험은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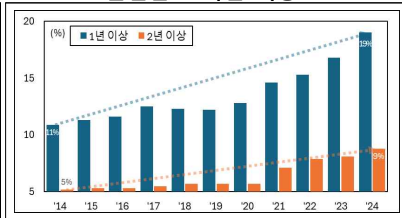
- 합계출산율은 '15년 이후 지속 하락후 최근 2년간 연속 반등\*
  - \* 합계출산율(명): ('15)1.24 ('21)0.81 ('22)0.78 ('23)0.72 ('24)0.75 ('25)0.80 ('26.1Q)0.95
  - 인구가 많은 예코붐세대('91~'96년생)의 30대 진입, 결혼·출산 정책, 코로나로 지연된 혼인 회복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의 원인
- 혼인건수도 최근 연속 반등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\*
  - \* ('00~'15) 약 30만건/年 ('19)23.9 ('20)21.4 ('21)19.3 ('22)19.2 ('23)19.4 ('24)22.2 ('25)24.0만건
  - 다만, 과거 10년 동안 30대의 미혼 비중이 확대\*되었고 혼인신고 지연도 2배 수준 상승\*\*하는 등 혼인·출산의 하방위험은 지속
  - \* <30대 미혼 비중(%)> 남성: ('15)44.2 ('24)62 // 여성: ('15)28.1 ('24) 44
  - \*\* 1년이상 지연신고 비중(%): ('14)10.9 ('20)12.8 ('21)14.6 ('23)16.8 ('24)19.0

<혼인·출생아수 추이>



\* 출처: 인구동향(국가데이터처)

<혼인신고 지연 비중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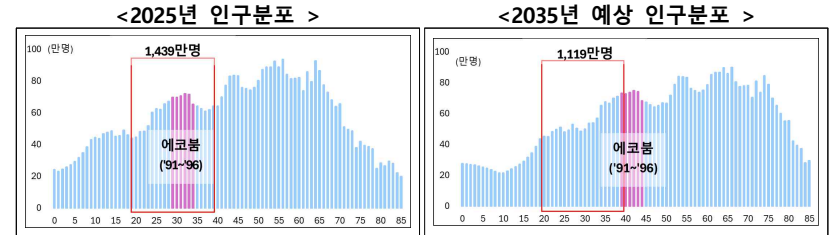
\* 출처: 국가데이터처

### 2 우리나라는 혼인이 합계출산율의 선행조건 + 10년 후 20·30대 인구감소 본격화(△300만명)로 저출생 구조 고착화 우려

-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'결혼·출산 간 높은 상관관계'인 점을 감안시 '혼인건수 제고'가 '합계출산율 제고'의 선행조건
  - \* 혼인의 출산비중(%,'22): (OECD 평균) 41.0 (佛) 65.2 (英) 51.4 (韓) 3.9 (日) 2.3

- 10년 후 20~30대의 인구 감소 본격화\*가 전망됨에 따라서 저출생 구조가 고착화 될 우려

\* <20~30대 인구> ('25) 1,439만명 ('35<sup>년</sup>) 1,119만명(약 △300만명 감소 예상)



\* 출처: 장래인구추계: 2022~2072년(국가데이터처, '23.12월 발표)

### 3 혼인신고시 주거지원 혜택 등 감소 + 결혼 부담 인식도 지속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(정부) 혼인신고 지연 비중 급증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원인(권익위, '25.12)
- (국회)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재설계 필요(기재위, '25.10)
- (청년) 혼인신고후 주택청약, 저금리 대출 배제 등 결혼페널티 문제(청년재단 '26.2)

- 혼인신고가 주거·세제·자산 지원 등에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 체계가 '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'이라는 문제 제기
  - 특히, 근로소득으로 자산축적이 어려운 상황 속\* 청년 입장에서 '경제적 부담'은 결혼 포기·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
  - \* 청년들이 일확천금에 몰리는 이유는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유일한 생존전략이기 때문(청년재단, 1차 청년관계장관회의)
- 결혼 메리트 부족 등으로 인해 '결혼=부담' 인식도 소폭 확대\*
  - \* 미혼남녀 50% 이상 "결혼은 커플에게 혜택보다는 부담"(인구보건복지협회, '26.2) <결혼하지 않는 이유(%, 데이터처)> 결혼자금 부족(1위): ('22) 29.7 ('24) 32.4

⇒ 향후 10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(Golden Time)이며 주거지원 정책 등을 '결혼 친화형으로 개편'하는 것이 핵심과제

## II. 추진 경과 및 개편방향

◇ 주택 청약·세제 등 개선 노력에도 '결혼=부담' 인식 여전히 존재  
→ '결혼=혜택'이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구조로 재설계 추진

### 1 [추진 경과] 청약제도 적극적 개편 + 세제지원·주택금융 개선

- 청약제도는 혼인신고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편\*
  - \* (예)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배우자 당첨 및 소유이력 미적용('24)  
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기준 완화(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→200%, '25)
- 주택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\*하는 등 개선 노력
  - \* 디딤돌(구입자금): 7 → 8.5천만원 // 버팀목(전세자금): 6 → 7.5천만원('23)
- 주택공급\*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물량·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, 주거·소득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제지원\*\* 강화
  - \*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물량 확대(민간): 18 → 23%('25)
  - \*\*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양도소득세·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5→10년

### 2 [개편방향]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주거·세제지원 등 재설계

- (평가) 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, 주거·세제지원 등에서 '결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제도'가 여전히 존재

#### <주요 예시>

- (주택) 주택 정책대출 부부 소득요건이 1인가구 2배 이하로 설정되어 혼인前 대출 가능한 사람이 혼인신고 이후 대출이 반려되는 상황 발생
- (자산) 결혼전 청년미래저금 가입가능 청년이 혼인신고 이후 2인가구 소득기준 초과시 가입 거절 상황 발생 가능

- (개편방향) 주거·자산형성·세제지원 부문별 지원 제도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
  -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'27년 예산안 반영 등 신속히 실시
  - 부동산 시장 상황, 가계부채 관리 등 타 정책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히 숙의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추진

## <참고> 기추진 주요 정책

현장의 목소리
<b>1 주택 청약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청약시 배우자의 혼인 前 당첨·소유 이력 적용 배제(결혼후 본인 기회 박탈)</li> <li>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 완화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외벌이·맞벌이 무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시당첨시 취소 처리 개편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제기 등</li> </ul>
<b>2 주택 공급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등</li> <li>•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물량 확대 등</li> </ul>
<b>3 주택 대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(구입·전세) 소득요건 상향</li> <li>•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(구입·전세) 대출한도 상향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디딤돌 대출한도 1인가구 2.5억원, 신혼가구 4억원으로 혼인 이후 총 대출한도 규모가 축소된다는 지적</li> </ul> </li> </ul>
<b>4 세제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세대 1주택 각각 보유자 결혼시 특례부여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• 근로장려금(EITC)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 필요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독가구 연 2,200만원 vs 맞벌이가구 연 3,8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만 적용중 → 세제지원 확대 필요</li> </ul>

### Ⅲ. 주요 추진과제

목표 **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 구현**

분야	부문	중점 추진과제
주거 지원	거주	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 ③ 출산·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
	대출 청약	④ 신혼부부 주택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⑤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
자산 형성	청년	⑥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
	농어업	⑦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 ⑧ 농업 창업 관련 용자 지원 한도 상향
세제 지원	주택	⑨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	결혼	⑩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

### 1 주거 지원

####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

< 행복주택 >			< 통합공공임대주택 >	
구분	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		구분	
혼인X(청년)	120%(1인, 458만원)		우선	
혼인O (신혼)	외벌이	110%(2인, 645만원)	일반	
	맞벌이	기존 130%(2인, 763만원) → 개선 160%(2인, 939만원)		

- (현행) 신혼부부 입주 소득기준 요건이 1인가구 대비 엄격하여 혼인신고 이전 입주 가능한 주택이 **혼인신고 이후 반려 가능**
- (개선방향)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**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\***하여 입주 기회 확대

\* (행복주택) 기존 月 763만원(월평균소득 130%) 개선 月 939만원(월평균소득 160%)  
 (통합공공: 일반) 기존 月 798만원(월중위소득 190%) 개선 月 924만원(월중위소득 220%이상)  
 (통합공공: 우선) 기존 月 462만원(월중위소득 110%) 개선 月 630만원(월중위소득 150%)

#### ② 공공임대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

- (현행) 공공임대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이후 소득·자산기준 초과시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 발생
- (개선) 소득·자산 **기준 초과시에도 재계약 허용(1회 한도)**

\* (現) 주택별 자산·소득요건에 따라 퇴거(행복주택은 자산 / 매입임대는 소득 또는 자산 등)  
 (改) **소득·자산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허용**

### 3 출산·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

- (현행) 공공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는 **2세 미만 신생아 가구인 경우에 한해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이주** 가능
  - \* (예) 기존 행복주택(36m<sup>2</sup>) 거주 → 출생 후 2년 내 국민임대주택(46m<sup>2</sup>) 등 넓은 평형대로 예비 입주자 신청 → 대기순번 도래시 입주
- (개선) 자녀 성장 등으로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이주할 수 있도록 **2세 미만 한도를 해제\***하여 **이주 신청 자격을 확대**
  - \*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공공임대주택 이주신청 가능 대상 조항 개정 (現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2세 미만 자녀를 둔 임차인)

### 4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

- (현행)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(버팀목 대출)에 대해 혼인신고 이후 **소득요건 초과 시 가산금리 부과**
  - \*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: 1인가구 5천만원 → 신혼부부 합산소득 7.5천만원  
↳ 혼인신고 이후 7.5천만원 초과시 가산금리(+0.3%p) 발생
- (개선)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**합산소득과 무관하게 혼인신고 이후 가산금리 50% 인하(0.3→0.15%p)**

### 5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

- (현행) 혼인신고 이후 7년이 도과한 부부, 사실상 가족관계(사실혼, 동거 등)인 출산가구가 **청약 기회가 없어지는 사례\*** 상당
  - \* (민영주택 청약시) 기존 출산가구 특공 물량 일부가 신혼부부 특공 물량으로 배정
- (개선)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히 **출산가구(만2세 미만)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% 이내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**(6월중 시행 예정)

## 2 자산 형성

### 6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

- (현행) 혼인신고로 인한 가구 중위소득 변경으로, **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\*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\*\* 발생 가능성**
  - \*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& 가구중위소득 200% 이하 청년(19~34세)
  - \*\* 例) 연소득 5천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하나, **혼인신고시 합산소득(10,000만원)이 가구중위소득 요건(現 9,432만원)을 초과하여 가입 불가**
- (개선) 신혼부부 등 **혼인 가구의 소득요건 완화(기혼자 특례)**

구 분('25기준)		현행
일반형	혼인 미신고(1인)	중위소득 200%(1인, 연 5,736만원)
	혼인신고(2인)	<b>중위소득 200%</b> (2인, 연 9,432만원)
우대형	혼인 미신고(1인)	중위소득 150%(1인, 연 4,302만원)
	혼인신고(2인)	<b>중위소득 150%</b> (2인, 연 7,074만원)

### 7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

- (현황) 혼인신고 이전 각각 독립 경영 시 모두 지급하는 **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이 혼인신고 이후 신청시 부부 일방에게만 가능\***
  - \* 혼인신고 이전 각각 지원금을 신청·지급받던 부부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지급, 혼인신고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는 반려되는 문제 발생
- (개선)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**가구당 지원 확대**

### 8 농업 창업 관련 용자 지원 한도 상향

- (현행) 결혼 전 청년 농업 경영인에 대한 창업자금 용자 지원 한도가 **혼인신고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**(가구당 최대 5억원)
- (개선) 부부 별도로 독립 경영 가구가 혼인신고 이후 용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**가구당 지원 확대**

### 3 세제 지원

#### 9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
- (현행)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 40% 소득공제(최대 연 400만원)
  - **세대주에 한정하여 지원**하므로 결혼 이전 각각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**혼인신고 이후 부부 일방에게만 부여되는 불이익 발생**
- (개선) 주말부부,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**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적용** 검토

#### 10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

- (현행) 세대별 경형차 1대에 한해 유류세 연 30만원 한도 환급 → 혼인신고 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어 **2대 모두 환급 제외**(~'26)
- (개선) **혼인신고시 세대당 경차 1대분**에 한해 환급 검토\*
  - \*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(~'26년) 연장 및 제도 개선여부 최종 결정

## IV. 향후 추진일정

정책 과제
<b>1 주거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완화</li> <li>▪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혼인시 계약 연장 허용</li> <li>▪ 출산·양육가구 공공주택 이주 지원 확대</li> <li>▪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</li> <li>▪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</li> </ul>
<b>2 자산 형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결혼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완화</li> <li>▪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상향</li> <li>▪ 농업 창업 관련 용자 지원 한도 확대</li> </ul>
<b>3 세제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</li> <li>▪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</li> </ul>

※ 향후 **저고위**(26.9월 인구위 개편) 중심으로 **주기적(반기) 과제 발굴·개선** 추진